

<b>제6회</b>	<b>민법 및 민사특별법</b>	<b>계약법 총론</b>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번호	정답	해설
1	④	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문제될 수 있다.
2	②	①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. ③ 중계계약은 비전형계약이다. ④ 고용은 계속적 계약이다. ⑤ 도급은 쌍무계약이다.
3	④	④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문제되지 않는다.
4	③	③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합의가 약정보다 먼저 적용된다.
5	④	④ 제대로 알지 못하고 = 착오, 일단 계약은 성립하고 다만 중요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.
6	②	②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7	④	①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 청약은 도달주의 원칙에 따른다. ②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할 수 있으나(자판기)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. ③ 청약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한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. 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청약자는 제한능력자에게 청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.
8	④	ㄱ. 정찰이 붙은 진열된 상품은 청약이므로 산다고 한 것은 승낙이 되므로 계약은 성립한다. ㄴ. 승낙을 거절하면 최초 청약은 실효되므로 다시 번복해서 승낙하더라도 새로이 청약을 한 것 뿐이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. ㄷ. 승낙은 격지자 사이에서도 승낙기간 내에 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. ㄹ.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에 =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9	④	①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므로, 2018. 9. 17.에 계약이 성립한다. ②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지만, 승낙의 통지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성립하므로 甲이 2018. 9. 25.까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. ③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. ⑤ 청약은 도달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, 甲은 乙에 대하여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.
10	④	① 회답할 의무가 없다. ②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, 甲이 다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 ③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10월 25일에 계약이 성립한다. ⑤ 청약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이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.
11	③	③ 채무자는 약의 또는 과실, 상대방은 선의·무과실이 요건이다.
12	④	ㄴ.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. ㄷ. 별개의 약정에 의한 경우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.
13	④	① 경개는 항변권 소멸사유이다. ② 이행불능 = 해제 ③ 전부에 대해서 항변권이 인정된다.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배제약정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.
14	③	①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한다. ② 상환급부(원고일부승소)판결 ④ 당연히 지체책임을 면한다. ⑤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.
15	③	③ 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동일성이 있어 항변권은 존속한다.
16	⑤	①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. ② 동시이행관계이다. ③ 동시이행관계이다. ④ 당연히 지체가 아니다.
17	③	채권자 위험부담의 경우를 묻는 문제이다. ① 원시적 불능(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) ② 채무불이행 ④⑤ 채무자 위험부담

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7-8월 단월별 문제집 정답지

18	②	② 제3자 귀책사유이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의 경우이다.
19	②	② 토지가 수용된 경우 채무자인 甲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는 매수인은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,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① 수용된 경우이므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채무자 위험부담의 경우로 甲은 이행을 면하고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, 乙은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③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. ④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. ⑤ 乙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일단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은 甲에게 귀속되고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.
20	⑤	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의 경우이다.
21	②	② 낙약자는 기본관계(보상관계)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(제542조)
22	①	① 수익자는 요약자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,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.
23	③	③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,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 즉,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24	④	④ 낙약자는 기본관계(보상관계)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(제542조)
25	⑤	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(대판 2003.1.24, 2000다5336,5343)
26	③	③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,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(대판 2011.4.28, 2010다 98412).
27	⑤	⑤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달리 약정할 수 있다.
28	②	① 약정해제도 원상회복의무가 있다. ③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 ④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. ⑤ 약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.
29	⑤	⑤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(대판 2014.3.13, 2013다34143)
30	③	③ 계약의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완전한 권리(물권·물권적 효력)를 취득하여야 한다.
31	⑤	⑤ 해제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32	②	① 해제를 한 날이 아니라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③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. ④ 해제이전에는 선의·악의 관계없이 제3자는 보호된다. ⑤ 해제권의 행사는 형성권이므로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33	⑤	⑤ 계약이 해제되면,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